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(김홍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2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23. 2. 27.
제 출 자	김홍섭, 이홍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

1. 제안이유

실제 출장 사유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칙의 적용범위를 실수요에 맞도록 개정하여 출장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 범위확대(안 제2조)

- 1) 현행: 거창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- 2) 변경: 중앙정부, 거창군수,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또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
나. 연임제한 신설(안 제4조)

다. 용어순화, 인용 조례명칭 등 정비(안 제4조·제6조·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: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집행부의견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- 1)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중앙정부, 거창군수,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회장협의회장 또는 경남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
제4조제4항 중 “연임”을 “한 번만 연임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“2/3”를 “3분의 2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을 “「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.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.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. <u>거창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</u> <p>5. 본회의 또는 「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</p> <p>6. 그 밖에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</p> <p>제4조(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연임</u>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,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 한다.</p> <p>⑤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<u>2/3</u>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⑥~⑧ (생략)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.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.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. <u>중앙정부, 거창군수,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또는 경남시군의회협의회회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</u> 5. 본회의 또는 「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. 그 밖에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<p>제4조(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두 번만 연임</u>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,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 한다.</p> <p>⑤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<u>3분의 2</u>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⑥~⑧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회의)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<u>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수당 및 여비)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<u>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</u>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<u>1명</u>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수당 및 여비)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<u>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</u>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